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5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1. 15
   다. 상정일자 :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폐지 및 신설된 민원 사무의 수수료를 정비하고

○ 수수료 감면 내용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사무를 정비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 조항 삭제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제증명수수료 징수대상 총 138개 품목중 2개종목이 신설되고 5개 종목이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6개 종목이 폐지되어 총 134개 종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아울러 수수료 감면내용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관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 환자 등 134명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 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참고적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인근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